

형법(7급)

(과목코드 : 132)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
- ③ 피고인들이 도청을 위한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다음 중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피고인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③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최협의로 이해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 ②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는 없다.
- ③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④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의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甲 등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乙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피해자 甲 등의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별 명의 각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 ③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6. 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써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차선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전혀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인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한 경우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현행 형법의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②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중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③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④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8. 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② 甲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④ 살인죄의 공동정범 甲이 다른 공동정범 乙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9.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④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거나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속 경찰관이 고유번호가 가짜인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토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②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상점점원에게 자신이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로 봄이 상당하다.
- ④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11. 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 ③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의사들은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④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12. 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죄의 미수가 된다.
- ③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친구 B를 상해할 의사로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이를 제지하려고 B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가 대신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13.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감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
- ②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디오감상실 출입문에 ‘18세 미만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라는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은 비디오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디오감상실 업자가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결과 (구)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③ 피고인이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고, 구미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
-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14. 다음 중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등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 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 ③ 회사 감사인 甲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한 경우 甲이 하드디스크를 일시 보관 후 반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고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15.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관 A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A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던 상황에서, A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ㄷ.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ㄹ.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甲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 甲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ㅁ.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해졌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ㅁ

16.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②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분범의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②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는 등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은 확정적이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와 같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 ④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18. 다음 중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신뢰의 원칙은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이고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④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만 성립한다.

19. 형법해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유력한 원인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④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1.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포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2.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형벌법규의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규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소송조건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므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법률이 이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란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하며,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③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24.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8조에 의한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단순한 동거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 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 ④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25. 다음 중 대항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③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